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청소년의 올바른 투표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 년 8 월 4 일

청 원 인 : 서 지원

성 명 : 서지원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상3동

전화번호

소 개 의 원 : 서지원 (인) 외 17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3동
	성명 : 서지원
건명	청소년의 올바른 투표 인식을 위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9년 08월 04 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서지원 외 17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7회 정기회의 청소년 교육 위원회 의원입니다. 제17회 정기회의 & 청소년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청소년의 올바른 투표 인식을 위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 청원안>입니다.</p> <p>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던 투표율이 2012년 대선에서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투표를 시키는 것보다는 청소년기에 꾸준히 선거에 대한 교육과 모의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을 유도하고 시민 의식 향상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투표가 습관화된다면 성인이 돼서도 꾸준히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를 거듭하여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면, 투표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연령별로 고른 투표가 이뤄져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p> <p>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다음과 같이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신설)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p> <p><u>⑦ 만 11세 이상의 청소년은 대선, 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모두 모의투표의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단, 선거의 기본원칙을 따르며 선거가 없는 해에는 1년에 6번의 선거 의무 교육을 시행한다.</u></p>	

청원서

1. 제안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56.9%로 OECD 국가 평균 약 7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투표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율에 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19세 투표 참여율이 1.9%로 가장 낮았고, 20세 투표 참여율은 15.9%로 두 번째로 낮아, 정치의 미래라고 평가받는 젊은 층이 가장 투표에 무관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에서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투표 정당성의 결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9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20대가 45.9%, 60대 이상 69.7%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20대의 투표율보다 60대의 투표율이 24%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젊은 층의 투표율은 낮고, 반대로 노년층의 투표율은 높은 추세입니다. 이러한 투표율이 유지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투표에 취지와는 다르게 노년층의 의견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층의 편향 정책에 따라 정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수립의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투표는 각 정당에 지지율과 정권의 지지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시도할수록 정부에게 있어서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정책 수립에 유동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다시 떨어지는 등이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과 국가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거 당시에 높은 투표율을 가지고 선출된 대표는 낮은 투표율을 가지고 있을 당시의 선출된 대표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선거, 투표 교육을 하게 된다면 훗날 높은 선거 참여율을 가지게 될 것이고 국민이 국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와 개인 간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20대 33.95%, 30대 41.3%, 40대 55.4%, 50대 68.2%, 60대 이상 70.9%로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지도자는 투표하는 국민들로 만들어집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못마땅함이 있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국민은 제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선거에서 출마자의 당락 여부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집과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은 투표율이 높은 계층의 권리에 더 신경을 쏟게 되며,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령층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선출된 대표는 '통합'보다 '편향'된 정치를 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투표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2. 주요골자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만 11세 이상의 청소년은 대선, 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모두 모의투표의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단, 선거의 기본원칙을 따르며 선거가 없는 해에는 1년에 6번의 선거 의무 교육을 시행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p> <p>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p>	<p>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p> <p>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u>만 11세 이상의 청소년은 대선, 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모두 모의투표의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단, 선거의 기본원칙을 따르며 선거가 없는 해에는 1년에 6번의 선거 의무 교육을 시행한다.</u></p>
--	---

3. 기대효과

위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투표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투표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청소년들의 판단력을 기르고 자치권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미래의 정권의 방향은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위 개정안을 통해 민족의식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원인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3동

청원인 성명 : 서지원

청원인 전화번호 :